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56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안 제136조제1항)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3. 20.

다.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 실행 후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안 제136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안 제136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36조(벌칙) ① ----- -----7년 -----1억원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저작권 침해가 사적인 재산이나 인격은 물론 사회적 법익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법은 그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적 구제와 아울러 형사 제재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임에도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산업재산권과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 창작에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그 침해는 쉽고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저작권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큰 상황으로,³⁾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및 저작

1)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이하 생략)

2) [참고1] 참조

권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여 저작권자들의 처벌 강화 요구가 있으며, 또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창작 의지를 감소시켜 한류 콘텐츠 관련 문화산업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⁴⁾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벌칙조항을 「특허법」 등에서 정한 처벌 기준에 맞춰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해 전부수용한다는 입장임.⁵⁾ 아울러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경우 2001년 개정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⁶⁾

- 다만,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이 손실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형사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주로 손해배상 등 민사보다는 형사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이는 국가형

3) 불법복제물 이용률: 20.5%(‘20년), 19.8%(‘21년), 19.5%(‘22년), 19.2%(‘23년), 19.1%(‘24년), 문화체육관광부제출, “202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4) ‘23년 웹툰 불법 복제 이용률은 20.4%로 산업 피해 규모는 4,465억원으로 추산, 문화체육관광부제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5) 다만, 저작권 침해가 아닌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 등의 비밀유지명령 위반한 자의 처벌 기준과 동일하게 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피해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저작권 등 침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행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역시 넓어져 2000년 법 개정에 따라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경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2006년 개정에 따라 공중송신, 대여의 경우도 포함되게 됨. 오승중, 저작권법 제6판, 1680쪽~1681쪽.

별권을 사적인 갈등 해결에 활용하고 자칫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 대상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⁷⁾과 위와 같은 문제로 저작권자들이 민사적 구제수단보다는 형사적 구제수단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으므로 심사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은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침해 규모가 6개월 이내에 1천달러 이상이거나, 또는 침해저작물이 상업적인 배포를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상업적인 배포를 위해 준비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에 한해 형사적 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376

7)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14쪽.

8)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a)(1)

참고

타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특허법 (법률 제20322호)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법률 제20200호)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0200호)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